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대출금리에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법정출연금 항목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출연금의 보증부대출 출연요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2호 신설).

II. 심사경과

- 2025. 4. 17.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207099호) 제출¹⁾

1) “본 법안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소비·투자를 늘려 자영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위한 버팀목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 및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였음.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위기임. 내

- 제424회국회(임사회) 제5차 본회의(2025. 4. 17.)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소관위 심사기간: 2025. 10. 13.까지)
-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2025. 10. 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간주(체계자구 심사기간: 2026. 1. 12.까지)

Ⅲ. 검토의견

1.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안 제30조의3 신설)

- 안 제30조의3은 차주(借主)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²⁾
- 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2호는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성격이

란종식 지연과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민감국가 지정 등 연이은 대형 악재는 내수 부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해를지고 있음. 이에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동의함.”(의안번호 제2207099호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동의이유 중에서)

- 2)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i)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ii)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적 의무비용과 목표이익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iii) 법적 의무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35호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이 먼저 발의되었으나, 2025. 4. 28. 철회되었음.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기준」의 대출금리 반영 항목에서도 이미 제외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규정임.

- 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안 제30조의3제2항은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하되, 은행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금(이하 “보증부대출금”)의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차주가 부담하던 보증부대출에 대한 법정출연금 출연요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출금리 구성 항목 비교>

대출금리 구성 항목			대출금리 모범기준	개정안
기준금리			○	
가산금리	업무원가		○	
	위험 관리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	
		유동성 프리미엄	○	
		신용 프리미엄	○	
		자본비용	○	
	법적 비용	교육세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
		그 외 법정출연금	○	½ 미만
		예금자보험료	×	×
		예금지급준비금	×	×
	목표이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	

3)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보증으로 하여 받는 대출금

-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의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i)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ii)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에서 은행도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시 법적비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2.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 처벌(안 제68조제1항제2호 신설)

- 안 제68조제1항제2호는 안 제31조의3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 시, 임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다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와 관련해서는, 그 법정형 수준이 다른 위반행위 제재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었는지 및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i) 「은행법」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 ii) 금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⁴⁾과 iii) 「은행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거나, 은행 임원의 해임 권고,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고,⁵⁾ 해임·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등 대출금리 위

4) 「은행법」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반행위 제재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벌칙 개정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① ----- ----- ----- ----- ----- ----- ----- ----- ----- ----- -----.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2. ~ 8. (생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⁷⁾ 등 다른 유사 금융관계법과의 형평성,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개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제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은행 업무체계상 법 위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시 형벌 부과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법무부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반영’의 의미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유사입법례 역시 찾을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차주의 신용도,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임에도, 특정 요소들의 반영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산입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벌을 삭제하되,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7)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등으로 규율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입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점검의무를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현행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자는 의견임.

< 「은행법」 상 제재 유형 및 위반 내용 >

제재 유형	위반 내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66)	-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21의2)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67)	- 미승인 자본금 감소(§10①)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35의2①)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8)	- 최저자본금 유지하지 않은 경우(§9) - 산업금융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이 당좌 예금을 취급한 경우(§32) - 채권발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33) - 금지업무(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투자, 부동산 소유, 은행주식담보대출, 임직원대출 등)를 한 경우(§38) - 인가없이 합병·해산·폐업한 경우(§55) 등
1억원 이하 과태료 (§69①)	- 대출금리 등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제한 위반(§30) - 경영공시(§43의3)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공시(§52의2) - 불건전영업행위(§34의2①) -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 미준수(§34의3①)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69②)	- 중대 금융사고 금융위 보고 및 공시(§34의3③)
3천만원 이하 과태료 (§69③)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미흡 등(§52의4)
2천만원 이하 과태료 (§69④·⑤)	- 금리인하요구원 안내 의무 미준수(§30의2②) 등
※ 참고로, ① 임원 등이 벌금형 이상의 벌칙을 받는 경우, ②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선임 등이 제한됨.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